

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
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, 학습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활동·보호·지도 등을 통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.
- 나. 2024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 :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

나. 추진근거

- (1) 「청소년기본법」 제48조의2
- (2) 「구미시 청소년기본조례」 제6조, 제8조
- (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다. 위탁사무 :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전반

- (1) 청소년의 역량 개발 지원
- (2) 청소년의 기본학습 및 보충학습 지원
- (3)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, 시설 지원 및 상담, 학부모 교육
- (4)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개발 및 연계
- (5) 그밖에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

## 라. 시설개요

- (1) 시 설 명 : 구미시 청소년문화의 집
- (2) 소 재 지 : 구미시 상사서로4길 10, 2층
- (3) 직원현황 : 3명(팀장 1, 담임 2)

## 마. 위탁기간 : 2025. 1. ~ 2027. 12.(3년)

※ 최초 위탁 : 2007. 1.

## 바. 위탁조건

- (1) 구미시에 주(분) 사무소가 등록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(법인)
- (2)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추진 실적이 있는 청소년 단체(법인)
- (3)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,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, 구미시와의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## 사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- 1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- 2) 평가내용 :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- 3) 평가방법 :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아. 소요예산 : 221백만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 ※ 2025년 추계액 기준

자. 적정성검토결과 : 적정 ※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

차. 성과평가결과 :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합평가 결과 활용

카.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## 3. 부서의견

청소년방과후 돌봄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

# 관계법령

## □ 「청소년 기본법」

제48조의2(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(全人的) 성장·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「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」

제6조(청소년육성사업 등)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참여 보장
2. 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
3. 청소년수련활동, 문화활동, 국제·지역교류 활동,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
4. 청소년의 노동권, 건강권,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, 체험, 교육활동
5.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,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, 교육활동

6. 청소년의 교육·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
7.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, 교육, 상담활동
8.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,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
9.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와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
10. 장애,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·예술·체육·캠프 등의 활동
11.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 법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지원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제8조(사업의 위탁) 시장은 제6조의 청소년육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## 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2.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#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재정수반요인

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·운영으로 재정소요가 예상됨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에 따른 예산 편성기준 준용  
나.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으로 함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향후 3년간 구미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비용은 총 682백만원으로 연평균 227백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계
세출	221	227	234	682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국비	110.5	113.5	117	341
지방비	110.5	113.5	117	341
계	221	227	234	682

### 5. 부대의견 : 없음

### 6. 작성자 :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 임인숙(☎480-2722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기 간	항 목	예 산 액	산 출 기 초
합 계		682,000 (추정)	
2025	소계	221,000	
	인건비	112,000	• 급 여 77,000천원
			• 퇴직적립금 8,000천원
			• 보 험 8,000천원
• 처우개선비 19,000천원			
사업비	109,000	• 급 식 비 50,000천원	
		• 프로그램운영비 39,000천원	
		• 일반운영비 20,000천원	
2026	소계	227,000	
	인건비	115,000	• 급 여 79,000천원
			• 퇴직적립금 8,000천원
			• 보 험 8,000천원
• 처우개선비 20,000천원			
사업비	112,000	• 급 식 비 51,000천원	
		• 프로그램운영비 40,000천원	
		• 일반운영비 21,000천원	
2027	소계	234,000	
	인건비	118,000	• 급 여 80,000천원
			• 퇴직적립금 8,000천원
			• 보 험 8,000천원
• 처우개선비 22,000천원			
사업비	116,000	• 급 식 비 52,000천원	
		• 프로그램운영비 41,500천원	
		• 일반운영비 22,500천원	

소 관 부 서		교육청소년과
입 안 자	과 장	김 종 미
	팀 장	김 병 진
	담 당 자	임 인 숙 (480-2722)